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지시 제 9 호 (70-2012) 1974. 5. 31

수신 :

제목 : 서울수산물도매시장과 서울청과도매시장의 이전조치

서울수산물 주식회사 및 서울청과 주식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산물부류 및 청과부류 도매시장을 한국냉장 주식회사 구내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관계기관은 이의 이행에 착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소재 서울수산물 주식회사의 수산물도매시장 (이하, 서울수산물이라 한다)과 서울청과 주식회사의 청과도매시장(이하, 서울청과라 한다)은 그 위치를 한국냉장 주식회사 구내 (노량진 소재)로 이전하되 동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 운용토록 한다.

가. 서울수산물과 서울청과는 74년 6월 1일부터 이전을 개시하여 74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완료한다.

나. 한국냉장 축식회사의 도매시장 대행권을 74년 9월 30일자로  
취소한다.

다. 시설 사용료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징수토록 한다.

년 거래액	10억원 미만일때	: 0.3%
"	20 "	: 0.4%
"	40 "	: 0.8%
"	100 "	: 1.0%
"	150 "	: 1.2%
"	150억원 이상일때	: 1.5%

단, 이전완료후 초기 1년간의 시설사용료는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0.3%로 한다.

라. 이전 촉진을 위하여 이전 기간중의 시설사용료는 서울수산 및  
서울청과의 전체 거래액에서 이전 장소에서의 거래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전 "다" 항 단서의 율에 따라 징수한다.

마. 서울특별시의 도매시장 대행 수수료는 거래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단, 이전기간 및 이전완료후 초기 1년간의 도매시장  
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0.5로 한다.

바. 임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만약 동 기간중에 한국냉장 주식회사의 도매시장 시설이 타인에게 매도될 경우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승계하도록 한다.

사. 이전 개시후, 거래액의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파견한다.

아. 농수산부는 이전된 장소에서의 중앙도매시장 기능이 정상화 될때까지 서울특별시내에는 수산도매시장(생선 어개류, 건 어개류, 염건 어개류, 염장어개류, 생해조류, 건 해조류) 과 청과도매시장의 분장 개설허가를 하지 않는다.

자. 농수산부, 서울특별시 및 관계부처는 중앙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사 도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차. 서울수산과 서울청과의 이전 장소에서의 수용평수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2. 서울특별시는 노량진 역사와 한국냉장 주식회사의 도매시장 시설간에 통행로 (인도 및 자전거용)를 조속히 개설토록 한다.

3. 서울특별시는 한국냉장 주식회사의 도매시장 시설입구에 버스 정유장을 설치한다.
4. 철도청은 도매시장 기능이 정상화되고 철도수송 수요가 증가 되면 노량진역을 급행화물 취급역으로 지정한다.
5. 경제기획원은 한국냉장 주식회사와 ADB 간의 차관 계약 제 5조 제 7항에 의한 ADB 의 사전승인 조치를 취한다.
6. 서울수산 및 서울청과의 이전과 관련된 시장 질서확립 및 도매시장 기능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농수산부,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관계부처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끝.

국            무            총            리